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변석준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회계사
 Tel. 02-6676-2490
 sbyun@deloitte.com

목차	
1	총설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의 취득가액
4	주요 익금항목에 대한 이해
5	주요 손금항목에 대한 이해
6	자산에 대한 평가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7	접대비와 기부금
8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9	준비금, 지급이자
10	부당행위계산부인
11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12	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이번 호에서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세무조정”이라는 주제는 본 기고의 2회차부터 10회차까지 계속 설명하게 될 주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무조정의 기본 개념과 각 세무조정에게 따른 소득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3회차부터 10회차까지 다루게 될 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무조정사항은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으로 구분된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맞춰 가는 과정이다. 즉, 회계와 세법상 차이 나는 항목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항목도 있고, 결산서상 수익 및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항목도 있다. 전자를 결산조정항목이라 하고, 후자를 신고조정항목이라 한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서에서 해당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익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결산조정항목은 반드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크게 표시하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통해서 과세소득은 작게 하고 싶어한다. 즉,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실적은 좋게 보이면서, 동시에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주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들이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한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서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 “조정”을 해서라도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다.

세법상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즉, 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항목의 경우에는,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해서라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결산조정항목으로 열거된 손금항목을 제외한 세무상 손금항목은 신고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항목은 손금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조정항목은 손익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

세무조정을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을 회계담당자 자의대로 처리가능한지 여부이다. 즉, 결산조정항목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조정항목은 세법에서 정하는 귀속시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이다.

결산조정항목은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므로,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하고 싶은 사업연도에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손익귀속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조정항목은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해서라도 해당 사업연도, 즉 세법상 귀속시기로 정해 놓은 사업연도에 처리해야 하므로 회계담당자 자의대로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결산조정항목은 처리하고자 의도한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해서 손익을 인식하면 되지만, 신고조정항목은 처리해야 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 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잘못된 처리를 다시 조정해서 신고(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항목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인지,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법인 외부로 이익이 유출되는 방식), 각종 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법인 내부에 이익이 유보되는 방식)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식을 구분하는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산출되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분유형만을 결정하면 된다. 즉, 크기는 세무조정사항

들은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것인지,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소득처분인 것이다.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 유보,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처분의 종류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가산항목 중에서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사외유출)
- ② 가산항목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유보) 또는 차감항목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부의 유보, △유보)
- ③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나 회계상의 자산 및 부채와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기타)

사외유출은 회계상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이고, 이렇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한 금액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 사업자, 기타의 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사외유출의 경우 해당 금액이 누구에 귀속되었는지에 따라서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지출한 인건비(소득처분상 상여),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구매비용(소득처분상 기타사외유출) 등을 손익계산서상 각종 계정과목명으로 표시한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소득의 종류	귀속자	귀속자에 대한 과세
배당	주주	배당소득으로 과세
상여	임원 또는 사용인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이미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추가로 과세하지 않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를 들어, 회사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경우, 당해 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 주주에게 회사가 당해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금액만큼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외유출의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즉, 소득의 귀속을 아무도 몰라도 회사의 대표는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사의 대표자에 지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부터 다룰 주제들에서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유보(또는 △유보)는 회계와 세법이 어느 특정시점에서 인식하는 순자산가액이 차이 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처분이다.

유보(또는 △유보)는 회계와 세법 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 또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보(또는 △유보)는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인 △유보(또는 유보)에 의하여 상쇄되어 없어진다(일시적 차이). 향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회계의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회계상 해당 주식의 가액을 2,000원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주식의 회계장부상 자산가액은 2,000원이 되고 손익계산서상 주식평가이익 1,000원을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미실현된 소득(즉,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평가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해 회계처리에 대해서 주식평가이익 1,000원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게 되고, 당해 세무조정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기 위해서 △유보 소득처분하게 된다.

이후 해당 주식을 2,000원에 처분하게 되면 회계상으로는 처분이익이 0(=양도대가 2,000원 - 주식이액 2,000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전에 △유보로 계상했던 1,000원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익금산입함으로써 처분이익을 처분시점에서야 비로서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각 시점 별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	세무	세무조정
취득 시점	(차)주식 1,000 /(대)현금 1,000	(차)주식 1,000 /(대)현금 1,000	-
평가 시점	(차)주식 1,000 /(대)평가이익 1,000	-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시점	(차)현금 2,000 /(대)주식 2,000	(차)현금 2,000 /(대)주식 1,000 처분이익 1,000	익금산입 (유보)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처분은 향후 관련 세무조정을 다루는 주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